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안 제7조)

-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조항 삭제
  -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주민의견서 등

### 나.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안 제1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시 경미한 변경 대상 면적의 범위 확대
  - 구역면적 5퍼센트 ⇒ 10퍼센트

### 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안 제1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적용 대상으로 조문 삭제

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등(안 제28조)

- 개발행위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사유 명시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 청문절차 이행 근거 제시

마.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안 제52조제2항)
  - 건폐율 : 50퍼센트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안 제57조제1항19호)
  - 용적율 : 125퍼센트

바. 군계획위원회 기능 명확화(안 제61조)

-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기능을 나열

사.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64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에 따른 근거 명시
  -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등

아.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64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따른 근거 명시
  -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자. 분과위원회 기능 명확화(안 제65조)

-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구분

차.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안 제65조의2)

-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25명 이내의 공동위원회 구성

카. 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 근거 명확화(안 제72조)

-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규정 강화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7. 29. ~ 2015. 8.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심사완료

-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원안의결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사항 2건 조례안 반영

- ① 지방채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

- ② 위원의 대리 참석을 규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조항으로 삭제 필요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10조제10호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의 범위에서”를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개발행위의 취소)”를 “(개발행위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영 제84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영 제93조제2항”을 “영 제92조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강원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제6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에 따른”을 “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6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7항에 의한 평창군 공동위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평창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을 “「지방공무원법」 및 「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6부터 별표 12까지, 별표 15부터 별표 20까지,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6]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별표 7]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별표 8]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별표 9]

###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1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2호 자 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 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 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 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 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중 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 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

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 11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p> <p>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p> <p>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p> <p>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와 「평창군건축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건축</p>	<p>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p> <p>② 삭제</p> <p>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 ----- -----</p>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 17. (생략)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

11. ~ 17. (현행과 같음)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  
-----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

<삭제>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첩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

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첩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  
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

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  
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  
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  
지의 형질 변경

####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  
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  
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  
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  
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  
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  
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  
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  
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  
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  
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  
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  
적 이상으로의 분할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  
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  
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  
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8조(개발행위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제28조(개발행위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생략)

<신설>

제55조(방화지구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 :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방화지구 등의 건폐율 완화) -----

-----  
-----

1. 영 제84조제5항제1호-----

-----  
-----  
-----

0퍼센트 이하

2. ~ 4. (생략)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 · 21. (생략)

② ~ ④ (생략)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

-----

2. ~ 4. (현행과 같음)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  
-----.

1. ~ 18. (현행과 같음)

19. -----  
----- .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 2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7항 -----  
-----  
-----  
-----



를 =  $(1+0.3a)/(1-a)$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생략)

제60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란 영 별표 19 제2호자목(1)에서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 -----  
-----  
-----  
-----  
-----  
-----  
-----  
-----  
-----  
-----.

제61조(기능) -----  
-----  
-----.

- 1.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강원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신 설>

<신 설>

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삭 제>

제64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  
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  
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때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  
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  
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제65조(분과위원회) ① -----  
-----  
-----  
-----  
-----.

1. -----

가. ----- 의 규정에 의  
한 -----  
-----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제5항과 이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0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 ⑤ (생략)

<신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7항에 의한 평창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평창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  
-----  
-----  
-----  
----- 둔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  
---- 「지방공무원법」 및 「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

② ----- 임기  
제 공무원 -----  
-----.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댓값은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7.16)

###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 ④ 생략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 ④ 생략

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시행 2016.2.12>

제78조(용도지역의 용적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 ⑥ 생략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 1 ~ 4. 생략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④항 10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 6. 생략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5. 생략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의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전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22. 생략

② ~ ③. 생략

##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11.28. 일부개정

### 부칙 <제25273호, 2014.3.24>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2호의2 및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4) 중 "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을 각각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로서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37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2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사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1호아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동호 가목·나목 및 타목"을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2호과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18 제2호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과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0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통령령 제250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 중 "같은 호 사목"을 "같은 호 너목"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2 제2호가목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을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7 제1호카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